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배재만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결산검사 항목인 결산개요, 세입·세출의 결산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 등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령 위배 및 인용 법령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결산검사 위원 정수는 “3인으로”를 “3명 이상 5명 이하로”로 개정(안 제2조)

○ 위원 중 1인은 성주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는 단서 삭제(안 제3조)

○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종전 “세입·세출의 결산, 계속비·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, 채권 및 채무의 결산, 재산 및 기금의 결산, 금고의 결산”에서 “결산개요, 세입·세출의 결산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결산서의 첨부서류 , 금고의 결산”으로 개정하여 현실화 함(안 제7조)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3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(검사의원의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)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(안제7조제2항)

○ 별표 중 일비를 “80,000원”에서 “100,000원”로 개정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

○ 기　　타 : 조례안예고(2019. 5. 8 ~ 2019. 5. 17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보다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 등 결산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5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성주군 예산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위원의 정수, 선임방법, 위원수당의 현실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, 본 조례를 개정·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